

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2-137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출연대상 : 서울신용보증재단(이사장 : 주철수)
 - 재단소개 : 서울시 유일 금융·비금융 지원기관, 신용보증사업추진
- 관련법령
 - 지방재정법 제18조
 -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
 -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
- 사업내용 : 특별신용보증사업 추진
 -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서울신용보증 재단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

○ 출연 필요성

- 코로나19이후 보증 공급이 폭증함에 따라 우리구의 출연금으로 운영하였던 특별신용 보증사업 보증 한도가 소진되어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추가 출연이 필요함

○ 출연금액 : 10억원

-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 의결후, 2023년 회계연도 사업예산(안) 심의를 통해 출연 금액 확정

○ 추진일정

- 2022. 11월 : 구의회 의결 요청
- 2022. 11월 ~ 12월 : 예산심의 및 확정

3. 출연현황

(단위 : 억원)

2005년	2009년	2010년	2012년	2013년	2020년	합계
2	2	2	2	2	16	26